

변 경 대 비 표

■ **펀드명** : 하나가치성장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■ **변경효력발생(예정)일** : 2026 년 09 월 11 일

■ **변경사유**

- 모투자신탁 추가(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
- 신탁업자 보수 배분조항 신설

■ **신탁계약서 변경사항**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 자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모투자신탁 추가	①~③ (생략)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태극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. 하나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(추가) ⑤ (생략)	①~③ (생략)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나태극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2. 하나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3.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⑤ (생략)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모투자신탁 추가	집합투자업자는 -(생략)-따른다. 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하며,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제 2 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가. 제 3 조제 4 항제 2 호 (추가) 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 수준으로 한다. (수준이라	집합투자업자는 -(생략)-따른다. 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하며,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제 2 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가. 제 3 조제 4 항제 2 호 및 제 3 호 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 수준으로 한다. (수준이

		함은 $\pm 10\%P$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나. (생략) 2. (생략)	라 함은 $\pm 10\%P$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나. (생략) 2. (생략)
제 39 조의 2(모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	신탁업자 보수안분	<추가>	제 39 조의 2(모투자신탁의 신탁 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 집합투 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 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 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%(연 1000 분의 0.15)에 해 당하는 금액(이하'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'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 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 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 업자에게 지급한다.

■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목적 및 전략	모투자신탁 추가	-	하나우량증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추가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정보 업데이트

■ 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			
투자목적 및 전략	모투자신탁 추가	-	하나우량증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추가
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정보 업데이트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운용전문인력	모투자신탁 추가 및 업데이트	-	하나우량증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 추가 및 업데이트
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모투자신탁 추가	-	하나우량증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 추가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모투자신탁 추가	-	하나우량증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 추가
9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모투자신탁 추가	-	하나우량증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 추가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 (세전기준)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모투자신탁 추가	-	하나우량증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 추가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<u>정보 업데이트</u>